

| | | | |
|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21. 9. 14.(화) 배포이후 * 인터넷 2021. 9. 14.(화) 배포이후 / 총 3쪽 | | |
| 담당부서 |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| 과장 이귀례 | 032-460-4750 |
| | | 팀장 김현숙 | 032-460-4951 |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/local/jungbu/index.do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(21.9.10~10.8)」 운영

- 중부지방고용노동청(청장 이현수)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9. 10.부터 10. 8.까지 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」을 운영한다.
 -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, 추가징수액(최대 5배)은 부과하지 않으며,
 - 또한, 부정수급액,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, 처벌전력 등을 검토하여 검찰청에 형사처벌*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.
- 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한편,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8월 현재,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858건(부정수급액 16억원)를 적발하였고,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반환 명령하였다.

-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,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제공, 취업, 소득발생 등 미신고, 이직사유 거짓 신고, 인터넷 실업인정 대리 신청(전송), 허위근로 등이다.
-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인천의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한 A씨가 소속만 용역업체로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,208,4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밝혀내고, 총 7,070,100원을 반환 명령하였으며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
-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에도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.
-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,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%를 포상금*으로 지급한다
 - *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, 사업주와 공모시 5,000만원 한도로 지급
- 자진신고 기간 종료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.
- 이헌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“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, 고용보험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”고 밝히면서
- “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, 이번에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, 4층), 팩스(0508-8230-0115)등으로 접수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(☎ 032-460-4753, 4951)로 문의하면 된다.